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83호

나. 발 의 자 : 이종환 의원(찬성자 9명)

다. 제안일자 : 2022년 8월 29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신규 등록 박물관 증가에 따라 현행 제1조에 나열된 박물관 명칭을 삭제하고 신규 개관 박물관을 포함하여 별표에 명시함(안 제1조 및 별표 신설).
-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관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 라. 운영위원회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 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 마.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14조).
- 바. 대관허가 신청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 단으로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함(안 제18조).
- 사. 대관허가 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공개 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박물관 목록을 별표로 관리하여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개관일을 확대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음.
- 또한 보훈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휴관제외일 확대, 관람료 면제자 확대 등 현행 제도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임.

나. 박물관 목록 별도 작성(안 제1조, 안 별표)

- 개정안은 총 6개소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별표>를 신설하여 목록으로 작성·관리하려는 것임.

< 박물관 명칭과 위치 신설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명칭 및 위치(제1조 관련)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서울역사박물관</td> <td>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2-1)</td> </tr> <tr> <td>청계천박물관</td> <td>성동구 청계천로 530 (마장동 527-4)</td> </tr> <tr> <td>서울생활사박물관</td> <td>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공릉동 622)</td> </tr> <tr> <td>한성백제박물관</td> <td>송파구 위례성대로 71 (방이동 88-20)</td> </tr> <tr> <td>서울우리소리박물관</td> <td>종로구 율곡로 96 (와룡동 5-9)</td> </tr> <tr> <td>서울공예박물관</td> <td>종로구 율곡로3길 4 (안국동 175-112)</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서울역사박물관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2-1)	청계천박물관	성동구 청계천로 530 (마장동 527-4)	서울생활사박물관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공릉동 622)	한성백제박물관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방이동 88-20)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종로구 율곡로 96 (와룡동 5-9)	서울공예박물관	종로구 율곡로3길 4 (안국동 175-112)
명 칭	위 치														
서울역사박물관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2-1)														
청계천박물관	성동구 청계천로 530 (마장동 527-4)														
서울생활사박물관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공릉동 622)														
한성백제박물관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방이동 88-20)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종로구 율곡로 96 (와룡동 5-9)														
서울공예박물관	종로구 율곡로3길 4 (안국동 175-112)														

- 현행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적용 대상을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관리·운영 중인 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등 총 6개임¹⁾.
- 또한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로써 박물관의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것은 시민에게 혼란을 줄이면서, 입법기술상으로도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안 제1조와 안 별표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박물관

다. 휴관 제외일 확대(안 제2조제2호)

- 개정안은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일 경우까지 휴관하지 않도록 휴관제외일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관 및 휴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	-----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u>공휴일일</u>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	-----
		2. -----	-----	-----
		<u>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u>	-----	-----
		일 -----	-----	-----

- 서울시에 등록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26개로 개별 조례 또는 자체 방침으로써 휴관일을 정하고 있으며(붙임1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휴관일 현황), 현행 서울시 조례에는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을 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휴관 제외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대체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개관일수는 최대 7일까지 증가하게 됨(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 따른 대체공휴일).
- 박물관의 개관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라.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안 제5조)

- 개정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임.

< 보훈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현황 >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독립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 환자
	5·18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중 선 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 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이용료 면제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 이용료 50% 이상 감경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대
 관전시 제외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상 법령에 따른 관람료 면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제2호부터 제5호까지) 등 4개 법령에 따른 무료관람 대상자만을 나열하고 있으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5개 법령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미술관에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알림에 따른 정비대상 통보 및 입법추진 요청’(법무담당관-3019, 2021.2.23.) 공문을 통해 누락된 법령상 관람료 면제대상을 보완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따라서 국공립 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5개 법령을 조례에 추가하여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정합성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마. 대관의 투명성 제고(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 개정안은 박물관 대관시설의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대관 신청 절차와 심사 결과 공개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제2020-419호, 2020.9.7.)는 대관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권익위는 의결서에서 대관신청 시 특별한 이유 없이 방문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접촉에 의한 부정부패 발생 요인이 되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하였고, 최종 심사결과 미공개, 회의록 생산 규정 부재 등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이처럼 박물관 운영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제척·기피·회피, 온라인 접수, 심사결과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은 위원회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1

국립박물관·미술관 휴관일 현황

○ 서울 등록 국립박물관·미술관: 26개 (박물관 21개소, 미술관 5개소)

- 개별 조례를 통해 1월1일, 월요일, 설날 및 추석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운영

※ 필요 시 정기 휴관일 외 임시 휴관

번호	박물관·미술관명(지역)	휴관일	관련 조항
<박물관 21개소> - 시립 8 /구립 12 /교육청 1			
1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	1월 1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개관 및 휴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2	청계천박물관(성동구)		
3	서울생활사박물관(노원구)		
4	한성백제박물관(송파구)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개관)	
5	서울우리소리박물관(종로구)		
6	공예박물관(종로구)		
7	수도박물관 (성동구)	1월 1일	별도 조례 없음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자체 방침 근거 (상수도사업본부)
		월요일	
		설날, 추석	
8	서울상상나라 (광진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보육담당관) 제4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① 서울상상나라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 연휴, 추석 연휴	
9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동대문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한방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② 한방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0	돌리뮤지엄 (도봉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돌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① 뮤지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p>다음 날로 한다.</p> <p>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p> <p>② 뮤지엄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p>
1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구)	1월 1일	<p>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일)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p> <p>1. 1월 1일, 설날, 추석</p> <p>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p> <p>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2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구)	1월 1일	<p>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p> <p>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9. 15)</p> <p>1. 1월 1일, 설날, 추석날</p> <p>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p> <p>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3	성북선잠박물관 (성북구)	1월 1일	<p>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p> <p>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1월 1일</p> <p>2. 설날 전일, 설날 당일, 설날 다음일</p> <p>3. 추석 전일, 추석 당일, 추석 다음일</p> <p>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p> <p>5.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 연휴, 추석 연휴	
14	손기정기념관 (중구)	1월 1일	<p>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p> <p>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p> <p>1. 1월 1일, 설날, 추석</p> <p>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p> <p>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5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강동구)	1월 1일	<p>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휴관일)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p> <p>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 1월 1일</p> <p>2. 임시 휴관일: 구청장이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6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은평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개정 2016. 10. 20.)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 연휴, 추석 연휴					
17	허준박물관 (강서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허준박물관</td> <td>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td> </tr> <tr> <td>검재정선미술관</td> <td>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td> </tr> </table>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허준박물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검재정선미술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허준박물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검재정선미술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월요일							
설날, 추석							
18	송파책박물관(송파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9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중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 내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시설 개·보수, 전시관 전시물 교체 등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20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종로구)	1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5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21	서울교육박물관 (종로구)	법정공휴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 규칙 (교육청) 제3조(휴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2. 정기휴관일 : 월2회(휴관일은 내규로 정함) 3. 임시휴관일 : 관장이 장서점검, 보수공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1, 3주 수요일					

○ **국립박물관·미술관**

- 1월1일, 월요일, 설날 및 추석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운영, 필요시 임시휴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월요일 개관**

연도	박물관·미술관명(지역)	휴관일	관련 조항
1	국립박물관	1월 1일	<p>국립 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3., 2017. 1. 20.></p> <p>제2조(휴관) ①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3., 2017. 1. 20.></p> <p>1. 1월 1일</p> <p>2. 월요일(「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방박물관 중 부여박물관·공주박물관·진주박물관·청주박물관·대구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나주박물관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 한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p> <p>3. 설날 및 추석</p> <p>②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및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3., 2017. 1. 20.></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2	국립미술관	1월 1일	<p>국립 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16.></p> <p>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p> <p>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p> <p>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 전국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례

- 1월1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정기 휴관, 필요 시 임시 휴관

연도	박물관·미술관명(지역)	휴관일	관련 조항
<박물관>			
1	부산박물관 (부산)	1월 1일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2009. 2. 4>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6. 5. 10>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개정 2006. 5. 10> 3.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2	대전시립박물관 (대전)	1월 1일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2조(개관과 휴관) ① 대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3. 12. 12>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 2.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대전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3. 12. 12> ② 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3	경기도박물관 (용인)	1월 1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소속기관의 운영) ① 제30조의 재단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정한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지역문화교육본부, 소속기관, 뮤지엄지원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9.03.19><개정 2021.02.09>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4	속초시립박물관 (속초)	1월 1일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3. <삭제, 2008. 12. 18.> 4. 매주 월요일(단, 박물관 관련 행사로 인해 개관할 때에는 그 다음날) <개정, 2008. 12. 18.> 5. 그 밖에 시설물의 수리,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관장은 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을 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월요일 (박물관 관련 행사로 인해 개관할 때에는 다음날),	
5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1월 1일,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군산)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3. 시장이 휴관일로 정한 날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6	부천시 박물관 (부천)	1월 1일 법정 공휴일 다음날 설날, 추석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휴관)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매해 1월 1일 2. 설날, 추석 당일 3. 법정 공휴일 다음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휴관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람객들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실제 월요일 정기 휴무중
7	안산 어촌민속박물관 (안산)	1월 1일 월요일 설날, 추석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 등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 등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등의 대청소, 소독, 시설물의 정리·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밝히어 휴관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한국대나무박물관 (담양)	1월 1일, 2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공중에 공개한다. <개정 2017. 03. 03.> 1. 1월 1일, 2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9	통영 시립박물관 (통영)	월요일 공휴일의 다음 날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예외한다. 4. 그 밖에 시설점검 등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설날, 추석	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시장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10	영월군 박물관 (영월)	1월 1일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1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	1월 1일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7.28>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15.2.2> 3. 삭 제 <2015.2.2> 4.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신설 2020. 10. 5.>
		월요일 (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미술관>			
12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부산)	1월 1일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3	대전광역시립미술관 (대전)	1월 1일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그 밖에 작품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4	경기도미술관 (안산)	1월 1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소속기관의 운영) ① 제30조의 재단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정한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지역문화교육본부, 소속기관, 뮤지엄지원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9.03.19><개정 2021.02.09>
		월요일 (공휴일일 경우 제외)	
		설날, 추석	
15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개정 2007,2008,,2009,, 2016> 1. 1월 1일-설날-추석. 다만,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다. 2. 월요일: 제주도립미술관, 이종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 및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월요일	
		설날, 추석	
16	대구미술관 (대구)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삭제 <2011. 8. 1 조례 제4272호>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단서신설 2011. 8. 1. 조례 제4272호]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7	양주시립미술관 2개소 (양주)	1월 1일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날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시설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18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1월 1일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은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휴관일을 따른다. <개정 2020. 6. 12.> <단서신설 2020. 7. 17.>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p>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p> <p>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p>
19	수원시 미술관 4개소 (수원)	1월 1일	<p>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p> <p>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에서 운영시설별로 지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p> <p>1.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및 아트스페이스 광고: 매주 월요일(다만, 해당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한다.)</p> <p>2. 수원미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매주 월요일</p> <p>3.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매주 일요일 및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p>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추석	

의안번호
83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종환 의원	2022.8.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 상위 보훈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임</p> <p>〈주요 개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개관 박물관을 포함하여 시립박물관 별표에 명시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추가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관일 확대함 - 대관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추진경과	○ 2022. 8.29.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박환희 의원 외 33명)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22.1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조례 시행				
담당부서	박물관과	팀장	김득삼(☎2133-4183)	담당	조서영(☎2133-4185)